



제248회 임시회  
'06. 3. 24(금) 16:00

# 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

2. 제안 일자 및 상정일자

- 제안일자 : 2006년 3월 24일
- 상정일자 : 제248회 임시회  
2006년 3월 24일,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

3. 제안이유

-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시설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
정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조례명칭 변경 (청남대운영조례→청남대관리·운영조례)
- 민원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동절기 관람시간 단축 (제6조)
-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료, 사용료 감면 기준 (제7조, 제12조)
- 유희시설을 활용한 시설 설치·운영 기준 (제11조)
- 운영수익 증대를 위한 사용료 부과기준 (제12조)
- 시설 증설로 인한 위탁근거 추가 (제15조)

- 청남대 등록상표(BI) 유·무상 사용허가 규정 (제1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청남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현실운영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,
-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청남대의 관광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
- 특히,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,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충실을 기하였다고 생각됨
- 다만, 청남대 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와 타지역과 비교하여 보편타당한 규정인지, 또한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발생될 문제점, 보충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